창립 60주년 중소기업중앙회

KBIZ 중소기업연구소

정책브리프

Vol 28 | 2022.8월

Contents

Ⅰ. 이슈진단 1
- 중소기업 혁신성 회복을 위한 창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Ⅱ. 중소기업 정책연구 3
- 일본 금융기관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례와 시사점
-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쟁점과 정책방향

Ⅲ. [부록] 중소기업 경기전망 7

중소기업 혁신성 회복을 위한 창업 지원세제 개선방안 (1/2)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KBIZ정책연구단)

Ⅰ 창업 중소기업 지원세제

■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주요내용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도입목적**

– 창업기업의 생존 및 기반 확충

▪ **적용대상**

– 창업중소기업
– 벤처기업
– 에너지기술중소기업 등

▪ **적용기한**

– 2024. 12. 31.

■ 수혜내용

▪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 감면율은 기업유형·지역 등에 따라 차등 적용

구분		기본감면		추가감면
		수도권 내	수도권 외	
창업 중소 기업	일반	-	5년 50%*	상시 근로자 증가율 × 50%
	청년·생계형**	5년 50%	5년 100%	
벤처기업		5년 50%*		
에너지기술 중소기업		5년 50%		
창업보육센터		5년 50%*		

*신성장 서비스업은 최초 3년 75% 및 이후 2년 50%
** 생계형 창업 : 연간 수입 8,000만원 이하

■ 조세지출내역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통해 창업기업이 절감한 세액

(단위 : 억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망)	2022년 (전망)
소득세	997	1,122	1,499	2,281	2,418
법인세	2,012	1,701	1,942	2,665	2,900
계	3,009	2,823	3,441	4,946	5,318

Ⅱ 주요 국가의 창업중소기업 지원제도

■ **(미국)** 창업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민간과 창업기업의 연계 강화를 위해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강조

▪ 창업비용(start-up expenditure)의 세금감면(5천 달러 한도)과 함께 Startup America Initiative, 신생기업지원법(JOBS) 및 경제특구제도 등을 운영

■ **(유럽)**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접적 정책지원이 일반적이지만 R&D 및 혁신기업 등과 같은 특정 부문의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금감면 등을 운영

▪ **(프랑스)** R&D 투자를 수행한 혁신창업기업과 지역특구 및 도시재생특구에 입주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에 따른 세금감면을 제공

▪ **(아일랜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최초 3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기업 투자자금의 일부를 근로소득세에서 환급하는 스타트업 환급(SURE) 프로그램을 운영

중소기업 혁신성 회복을 위한 창업 지원세제 개선방안 (2/2)

Ⅲ 현행 지원세제의 평가 및 개선방안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정책적 타당성**

- **정부역할의 적절성의 측면**에서는 창업활동과정에서 창출되는 **고용 및 사회적자본 형성 등의 외부경제를 고려**할 때 조세지원을 통한 정부개입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수혜자의 특성, 보조대상 및 수준, 행정집행 및 부작용의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세지원의 방식이 재정지출에 비해 정책수단의 적절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 국가경제의 **생산·고용에서 중소기업 육성의 중요성 및 창업기업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자금지원의 필요성 측면**에서 정책목표는 적절

  - 조세지원의 대상도 **창업활성화의 정책목표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단, 창업활동 관련 과세소득으로 감면대상을 구분해서 기본적 제도운영은 적절

  - 정률의 세액감면율 대신 **영세한 창업기업에 대한 추가적 감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임의적 방식으로 규정된 적용대상 업종에 대한 명확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인사업자가 많은 창업중소기업의 조세지원의 활용도가 낮은 반면 창업 기업에 대한 보편적 성격의 다양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서 **중복성 해결을 위해 일반적 재정지원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창업기업의 특성에 보다 부합하도록 감면율을 확대하는 방식의 전반적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체적으로,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대한 **미시적 제도 개편과 함께 창업 과정에서의 세제 감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충분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함

〈중소기업 지원세제 개선제안 요약〉

① 정률의 세액감면율 대신 영세한 창업기업에 대한 추가감면
② 적용대상 업종에 대한 명확한 법령상 근거 마련
③ 창업기업에 대한 일반적 재정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창업기업 특성에 부합하도록 감면율 확대하는 전반적 개편 고려
④ 창업과정에서 세제 감면 활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본 브리프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 금융기관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례와 시사점 (1/2)

김규판 연구위원(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Ⅰ 일본의 지역활성화(地方創生) 정책

■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경험하면서 지역인구 감소, 도쿄 일극(一極) 집중 등으로 지방위기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음**

- 1980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의 전출인구는 340만명, 그 중 275만명이 수도권으로 전출
- 일본의 47개 광역단체(도도부현) 중 인구1인당 지방세가 가장 많은 도쿄도와 가장 적은 지역간 지방세 수입편차는 2000년대 중반 약 3배에서 2018년 2.3배로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심각

■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내각의 로컬 아베노믹스는 2014년 12월 「지방창생법」 제정하면서 출발**

- 지방창생 정책 컨트롤타워로 「지방창생본부」 설치, 지방창생 시책으로 「지방창생 종합전략(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4대 기본목표를 제시함

〈4대 기본목표〉

① 지방에서의 안정적 고용 창출
② 지방으로의 새로운 인구유입 흐름 조성
③ 청년층 세대의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희망 충족
④ 시대에 맞는 지역조성 및 일상생활의 안전강화, 지역간 연계

Ⅱ 일본 DBJ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례

■ **DBJ(일본정책투자은행 Development Bank of Japan)는 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역할을 주로 담당하며, 중점 지원영역 중 하나로 지역을 선정**

- 2009년 지역기획부 신설, 2014년 지역미래추진본부와 지역창생프로그램 신설

■ **교토 중소제조업 활성화 : 모노즈쿠리 기업 지원**

- (경위) 스타트업이 제품양산화 시범제작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과 노하우,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노즈쿠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
  - ㈜Darma Tech Labs는 기술·노하우 장벽해소 위해 교토 중소기업과 연계해 **양산화 시범제작 지원하는 'Makers Boot Camp'**를 2015년 9월부터 운영하기 시작

〈DBJ의 교토 중소기업 모노즈쿠리 공동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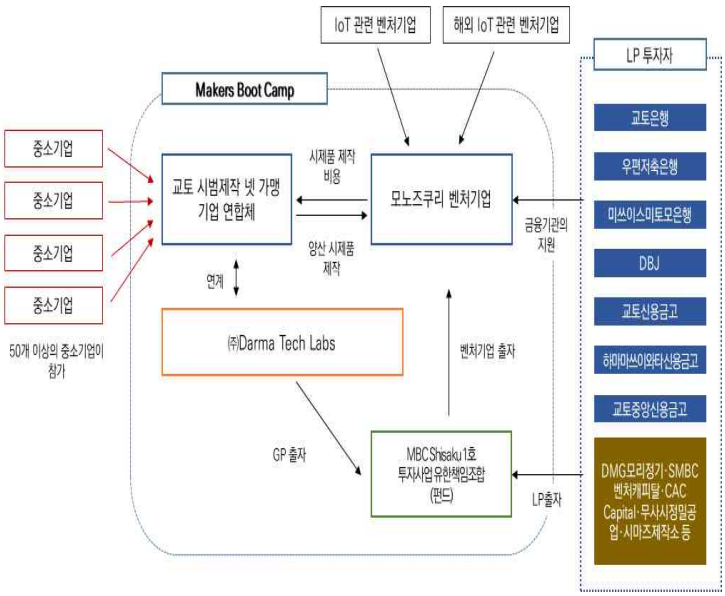

- (DBJ 지원내용) DBJ 등 금융기관은 'Makers Boot Camp'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모노즈쿠리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Darma Tech Labs 지원
  - DBJ 등 금융기관은 **금융지원, 지식·정보 제공, 대기업과 비즈니스 매칭 등** 각자 특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 이외 펀드에 대한 LP(유한책임조합원) 출자, 펀드에 대한 투자자 소개 등 실시

일본 금융기관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례와 시사점 (2/2)

■ **도야마시(富山市) 지역과제해결형 관민 플랫폼 구축**

▪(경위) 도야마시는 시와 교류관계 있는 젊은 '관계인구'가 참여하는 오픈이노베이션을 추진하고, **시내 전역을 랩(실험실)으로 활용하는 관민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플랫폼인 '도야마 시티랩'을 구축**함

- 도야마 시티랩에서 거점시설 기능을 수행하는 '스케치 랩'을 도야마역 앞 **市 소유시설내 정비하여 지역과제 해결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도모**하고 있음
- 스케치 랩은 단순 **코워킹 공간**이 아니라 미국 **실리콘밸리 경영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교류프로그램**을 충실히 갖추고 있음

▪(DBJ 지원내용) 이노베이션 분야의 지식·노하우를 활용하여 **도야마시가 추진중인 선진 사례조사와 전문가회의를 지원하고 플랫폼 설립 공헌**함

- 스케치 랩 회원을 대상으로 매년 교류프로그램 실시(DBJ 가치창조 경영연구회)

Ⅲ 지역 금융기관과 지역창생 *(로컬 10,000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로컬 10,000 프로젝트」는 '산관학+금융' 협력하에 지방의 자원과 자금을 활용하여 고용창출 잠재력이 큰 지역밀착형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총무성의 교부금 사업(지역경제 순환창조사업)임**

▪ 중앙정부가 지방교부금을 활용하여 지방의 신규 사업 프로젝트에 지역 금융기관 참여를 유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 수행

■ **총무성의 「로컬 10,000프로젝트(교부금사업)」 중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우수사례**

▪(교토부 교탄고시-2014년도) 지역 전통산업인 직물의 후계자 부족문제 심각한 상황. **교부금을 활용하여 새로운 직물공장을 정비**하고 **차세대 기능공 육성. 가방, 장식품 등 신상품도 제작**

- 지방교부2,000만엔+지역금융기관 융자2,000만엔

▪(도쿠시마현-2012년도) 일본 **토종닭의 분료를 활용해 친환경 비료를 제조**하기 위한 계사 개조에 교부금을 활용. 현지 **유기농산물 생산에 친환경 비료로 대체**함으로써 지역 내 자금순환 기여

- 지방교부5,000만엔+지역금융기관 융자6,400만엔

Ⅳ 시 사 점

■ **우리나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도 DBJ 지역경제활성화 사례처럼 지방은행 등 지역금융기관과 협력프로그램 개발 필요**

▪ **현재 산업은행**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방안은 지역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간접금융(온렌딩)이 유일**하므로 제도 다양화 필요

▪ 특히 **일본처럼** 사업운영체계를 플랫폼화하여 **'산관학+금융'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본 브리프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쟁점과 정책 방향 (1/2)

김은하 연구위원 (KBIZ중소기업연구소)

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동향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하 '온플법') 추진배경

- 최근의 소비 트렌드 변화,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경제의 급성장 등으로 이른바 '네카쿠배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도 함께 가파르게 성장
  - 2020년 1분기 8684억이던 카카오의 매출은 2021년 4분기에는 1조 1785억을 기록, 같은 기간 네이버는 1조 1547억원에서 1조 9277억원으로 각각 36%, 67% 성장
-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자의 71.3%가 플랫폼 이용 중개수수료가 부담된다고 응답하였고, 부당행위 경험 사업자도 과반에 달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혁신을 저해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남용행위 규제 필요성 주장

〈온라인플랫폼법 관련 주요 발의안〉

대상	법안	목적	소관부처
B2B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공정위
B2C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책임 구체화위한 기존 법 개정	공정위
B2B, B2C	「디지털플랫폼 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방통위·과기정통부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계약관계 확립	고용노동부

■ 해외 주요국 플랫폼 규제 동향

- 미국의 경쟁법은 지금까지 소비자 후생, 효율성, 미시적 효과에 근거한 반독점법 규율을 준수해왔지만, 2021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더욱 강력한 온라인 경제:기회, 혁신, 선택」 반독점 5개 패키지 법안을 통해 중소기업과 노동자 보호 및 사회적 후생을 포함한 거시적 효과 강조
- EU 의회는 플랫폼 기업 (게이트키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는 「디지털 시장법」과 이용자 기본권을 보호하고 불법 콘텐츠를 제어하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과시킴
- 일본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통해 거래조건 등의 정보공개와 플랫폼 제공자의 자율적 준수 등을 추진

Ⅱ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

■ 이번 정부는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를 통한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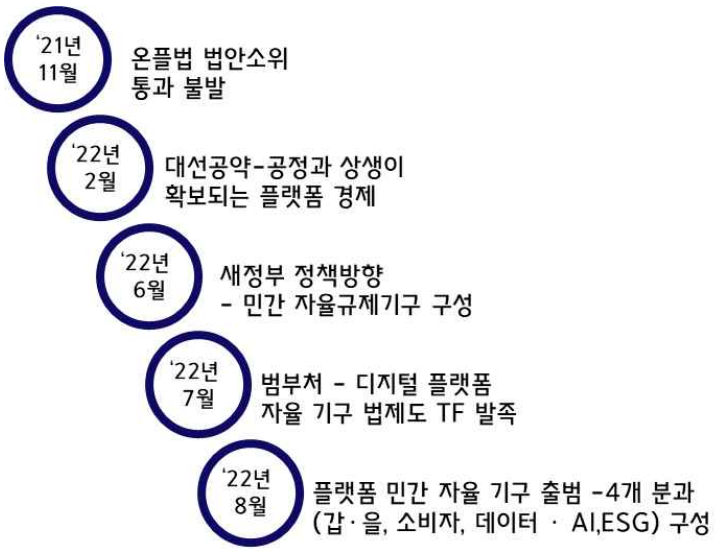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쟁점과 정책 방향 (2/2)

■ **자율규제(Self-regulation)는 개인,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이 규제의 대상자가 아닌 주체자가 되는 시장 자정 노력을 의미**

■ **자율규제는 정부 개입정도와 사업자의 자발성 혹은 강제성 정도에 따라 여러 유형이 존재**

▪ 정부 개입 수준은 상이하지만 대체로 기존의 자율규제기구는 정부·공적기구·법률 등에 의한 관리 대상

〈Marsden-Meyer의 자율규제 분류〉

강제성 정도		내용
1단계	감사받지 않는 자율규제	업계와 정부 사이 조정은 존재하지만, 협조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부재
2단계	감사받는 자율규제	합의된 자체 규제 주체에 의한 공식적 공개 감사
3단계	공식 자율규제	업계로부터 별개의 자금지원을 통해 만든 공식 자율규제 기관에 의한 규제
4단계	공동규제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정부의 사전 승인을 통한 규정, 자금 등 마련

김민정 (2020) 인용

Ⅲ 합리적 규제를 위해 남겨진 숙제

■ **자율규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신속성, 유연성, 제도 안착을 위한 업계 실태조사, 사회경제학적 분석 등이 없어 효율성과 업계 전문성도 갖출 수 있음**

■ **한편으로 자율규제가 갖는 명확한 한계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자율규제의 핵심성공요인은 결국 참여 사업자들의 엄격한 사회적 책임의식, 투명하고 공정한 자율규제 방안 선정과 실효성 확보임

▪ 자율규제 방안이 소비자와 사회 전체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업계 내부 이익 제고를 위한 도구로써의 남용 여부 점검이 필수적

▪ 이를 위해 규제 방안 선정 과정에서 정부나 공적기구를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 자간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조정과 감시가 필요

■ **플랫폼 자율규제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의 보완재가 될 수는 있어도 대체재로는 부족**

▪ 즉, 자율규제의 성격과 기능을 고려할 때 온플법이 의도한 범위까지 규제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

– 온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이 검색·배열 우선순위 결정 원칙을 공개하고, 이용사업자 차별행위,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 배타적 거래강요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해 기존의 공정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그 목적이 있음

▪ 무료 서비스로 시작해 이용자 점유율을 확보한 뒤 (락인·lock-in 효과) 가격을 올리는 '약탈적 가격 문제'가 한국 플랫폼 시장, 특히 공공 서비스인 택시 시장에서 발생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이미 소비자와 사용자에게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제정 논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

■ **결국 업계의 자정 노력과 더불어 온플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기초적 거래질서를 형성하고, 국내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업계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야할 것**

※본 브리프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록] 중소기업 경기전망

9월 전망

경기전반	생 산	내수판매	수 출	영업이익	자금사정	원자재	설 비	재 고	고 용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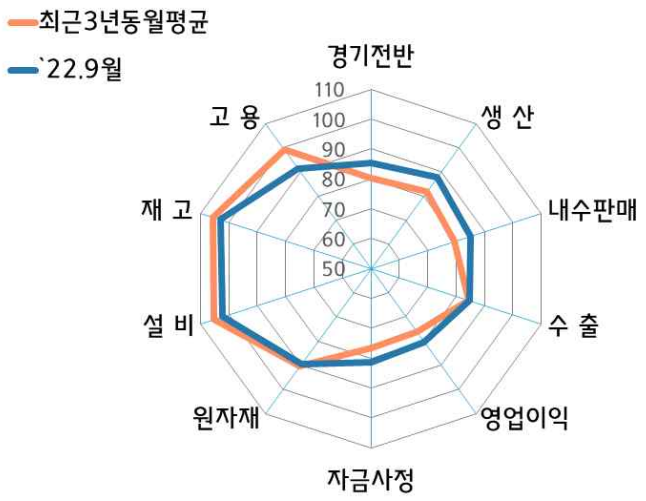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 **'22년 9월 中企경기전망지수 83.2로 전월대비 4.7p 상승해 4개월 만에 반등**

- 추석 연휴 등 내수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체감경기 하락세 다소 진정
- '22년 상반기 中企 수출은 전년동기비 8.8% 증가한 605억달러로, 역대 최고치 경신 ('21년 하반기 599억달러)
- 다만 주요 수출국의 경제 하방 리스크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요위축 등으로 수출증가세 둔화 우려도 존재

■ **최근 3년간 동월 SBHI* 항목별 평균과 비교한 결과 원자재 전망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이전 3년 평균치보다 개선 기대**

* 100 초과시 긍정 전망 / 설비, 재고, 고용은 역계열 해석

8월 동향

국제유가

한국석유공사

환율

한국은행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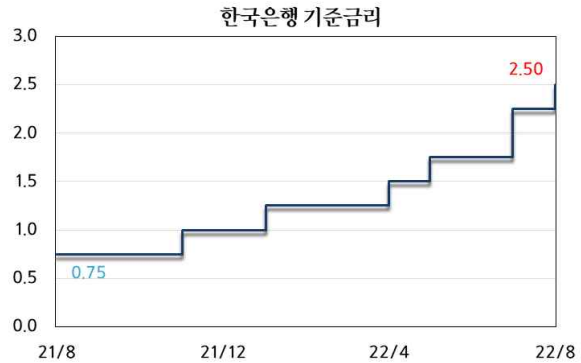

한국은행

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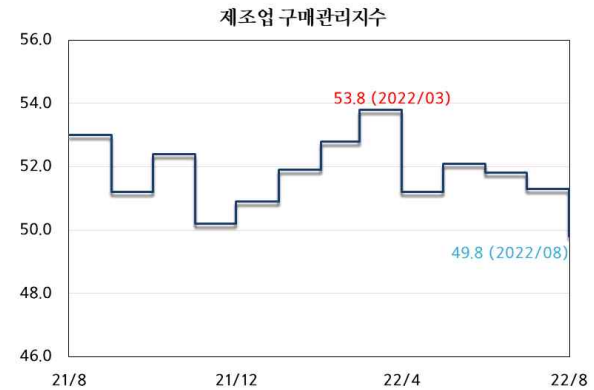

Investing.com

* 지수>50 : 경기확장, 지수<50 : 위축

KBIZ중소기업연구소는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 연구주제 제안
- 기고 및 연구진 참여 신청 (이력서)
- KBIZ정책브리프 운영방안

기타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또는 문의 주실 분들은
kbizlab@kbiz.or.kr로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60주년
중소기업중앙회

발행처 | 중소기업중앙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본관) | www.kbiz.or.kr